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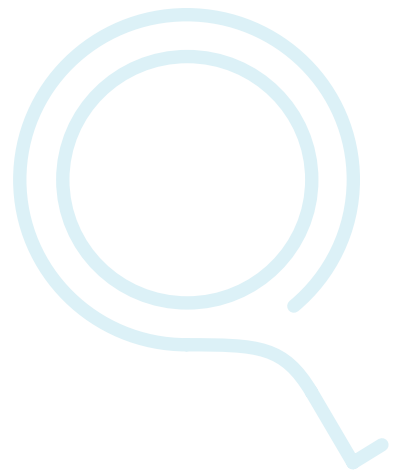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자가진단 Checklist

2022년 4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CONTENTS

- I.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및 주요내용
- II.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II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 소개



I.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배경과 제정 경과

배경

- 2011년 가슴기 살균제 사건
 - 2014년 세월호 참사
 -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故김용균氏 사망 사건
 -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38명 사망
- 사회적 참사
- 산업재해



경과

- 2020년 6월 강은미 의원 등 14명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 발의
- 2020년 9월 청원인 10만명 서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2.1.27 시행)
- 2021년 10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I.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법 제38조)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법 제39조)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673개 조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I.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요약)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2. 1. 27.)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 1. 27.)



II.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산업재해 분야)

경영자 리더십: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설정 등(시행령 4조 1호)

항목	Yes	No
안전보건 방침은 매년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과 함께 공표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직원에게 공지하고 있는가?		
매년 전사, 사업장(또는 사업부)별, 부서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가?		
안전보건 목표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 등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시행령 4조 2호)

항목	Yes	No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본사에 경영책임자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담조직은 환경, 총무 등 안전보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는가?(경영책임자 또는 공장장)		
사업장별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생산담당 부서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실시 및 운영, 잠재위험 발굴(시행령 4조 3호)

항목	Yes	No
모든 공정, 설비, 작업별 위험성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가?(비정형 작업 포함)		
위험성평가 시 관리감독자가 주도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하는가?		
신규 물질 도입, 공정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아차사고 수집 등 잠재위험 요인 발굴 활동을 하고 있는가?		
수급인이 실시한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가?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II.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보건 예산, 인력 및 업무수행(시행령 4조 4호~6호)

항목	Yes	No
안전보건 예산은 항목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가? (설비 투자비/안전보건 활동비/안전보건 교육예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정해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인원수 이상으로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인가?(100명 이상 사업장 685시간, 200명 이상 사업장 785시간)		

근로자 참여: 산보위/협의체 운영, 신고-제안 등 종사자 의견청취(시행령 4조 7호)

항목	Yes	No
산보위 및 협의체는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		
산보위의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 구성은 산안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적정한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시 수급사 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는가?		
산보위 및 협의체 안전 중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위험요인 신고, 안전보건 개선 제안 등 근로자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되어 있는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작업중지 지침 등(시행령 4조 8호)

항목	Yes	No
비상대응 매뉴얼에는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산안법 제52조 1항의 작업중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가?		
반기 1회 이상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훈련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II.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산업재해 분야)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절차 등(시행령 4조 9호)

항목	Yes	No
계약 담당부서에서 협력업체 등록 또는 계약 전에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는 절차가 있는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 기준이 있는가?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안전보건 법령 이행: 법규관리, 준수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시행령 5조 1호, 2호)

항목	Yes	No
사업장과 관련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목록을 작성하였는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가?		
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문서관리 규정 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하는가? (시행령 13조)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 관리, 교육 계획/실적(시행령 5조 3호, 4호)

항목	Yes	No
안전보건 교육 체계에 따라 교육의 종류, 대상자 명단, 교육내용, 일정, 방법, 예산 등의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는가?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가?		

II.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산업재해 분야)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조사, 사고통계 관리(법 4조 1항 2호)

항목	Yes	No
산업재해 및 공정사고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있는가?		
사고조사 시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Root-Cause-Analysis) 하고 있는가?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년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동일 사고 예방을 위해 횡전개를 통해 개선하는가?		
아차사고 및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현장 안전 관리: 안전작업허가제,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점검

항목	Yes	No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및 장소를 파악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는가?		
화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중장비를 이용한 양중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등 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는가?		
외주 업체 용역 작업 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도면, 물질 정보, 유해·위험요인 등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위험작업 진행 중 감시자 배치 및 안전보건 부서의 안전 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II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 소개

산업안전 컨설팅 개요

컨설팅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법령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본 컨설팅은 중처법 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 및 5조를 중심으로 수행함

컨설팅 대상

임직원 수 300명 이상 중견기업, 제조업종 사업장

※ 제조업 이외 업종의 경우 기업안전연구소와 사전 협의 필요

주요 특징

사업장 단위에서 실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의 규정, 매뉴얼, 절차서 등에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시, 기술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통한 실무적 개선방안 제시

산업안전 컨설팅 진단 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 경영자 리더십: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설정 등(시행령 4조 1호)
- 조직 진단: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적정성(시행령 4조 2호)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실시 및 운영, 잠재위험 발굴(시행령 4조 3호)
- 안전보건 예산/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시행령 4조 4호~6호)
- 근로자 참여: 산보위/협의체 운영, 신고-제안 등 종사자 의견청취(시행령 4조 7호)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작업중지 지침 등(시행령 4조 8호)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적격 수급인 평가 기준, 절차, 안전보건관리비 등(시행령 4조 9호)
- 안전보건 법령 이행: 법규관리, 준수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시행령 5조 1호, 2호)
-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 관리, 교육 계획/실적(시행령 5조 3호, 4호)
- 사고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수시 위험성평가, 사고통계 관리(법 4조 1항 2호)
- 현장 안전보건 관리: 안전작업허가제, 사망사고 발생 위험요인 점검(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처법 해설서)

II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 소개

산업안전 컨설팅 진행방법

진단팀 구성

기업안전연구소 2~3명(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조정):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ISO 45001 심사원

진단 기간

2일~3일 소요(사업장 규모나 지역에 따라 연장 가능)

세부 일정(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1일차

09:30 - 10:00: 개시회의(상견례, 사업장 소개)

10:00 - 12:00: 현황 파악, 조직 진단, 서류 점검

13:00 - 16:30: 서류 점검, 현장 점검

2일차

09:30 - 12:00: 서류점검, 현장점검, 면담(공장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대표 등)

13:00 - 16:00: 서류점검, 강평준비

16:00 - 16:30: 종료회의, 강평

서류 검토에 필요한 자료 목록

사전 제출 자료(방문 2주전 제공받아 검토)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2.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2022)
3. 안전보건관련 계획 대비 실적자료(2021)
4. 연간 안전보건 추진계획서(2022)
5. 재해현황(2019/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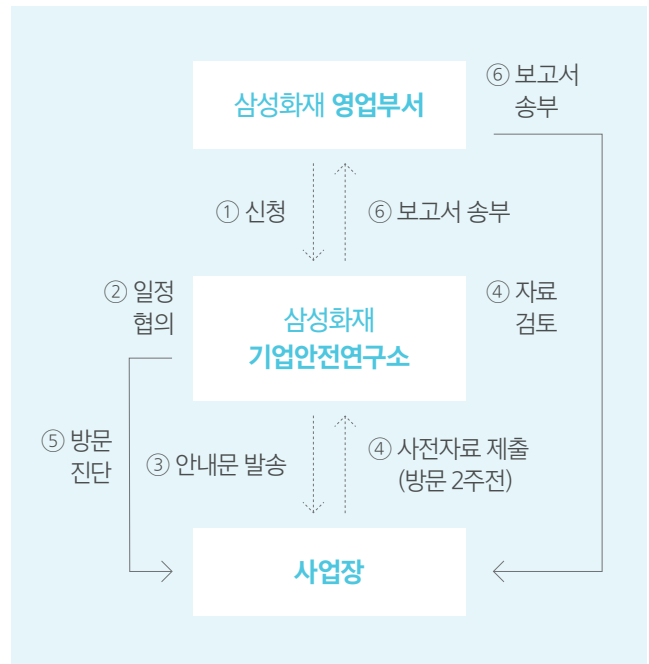
III.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 소개

방문 진단 시 필요 자료 * 자료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으며, 방문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기존 자료 제시(있는 자료만)

- | | |
|-------------------------------------|--|
| 1. 회사 조직도 | 12.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결과(2021/2022) |
| 2. 안전보건부서 및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분장표 | 13. 안전보건법규 대장 |
| 3. 안전보건관리 규정(50인 이상 사업장) | 14. 안전보건(작업)기준/지침 |
| 4.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지침서(안전작업 허가지침 등) | 15. 협력업체 안전관리 절차서 및 실적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실적,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포함) |
| 5. 부서별 안전보건 실행 계획서 | 16. 비상사태 대응 지침 및 훈련 실적 |
|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절차 및 회의록(50인 이상 사업장) | 17. 성과평가(측정, 모니터링 분석) 절차서 및 결과서 |
| 7. 위험성평가 절차서(지침서) | 18. 준수평가 절차서 |
| 8. 안전보건 제안제도 절차서(지침서) 및 운영결과(실적) | 19. 경영자 검토서 |
| 9. 공정 위험성평가 결과서 | 20. 사고조사 절차서, 재발방지 대책 추진내용 |
| 10. 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서(수작업, 협력업체 작업 등) | 21. 안전작업허가서 |
| 11. 안전보건 예산 내역 및 집행 실적 (2021/2022) | |

컨설팅 업무 처리 절차

- ① 영업부서 신청
 - 사업장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
- ② 기업안전연구소 협의
 - 업종, 규모, 일정, 사업장 사전 협의 등
- ③ 컨설팅 안내 메일 발송
 - 일정, 방문자 정보, 사전 검토자료 제출 안내
- ④ 사전 제출자료 검토
 - 방문 2주전 사전 자료 제출 받아 검토
- ⑤ 사업장 방문 진단
 - 기업안전연구소 2~3명, 2~3일간 방문
- ⑥ 결과 보고서 송부
 - 방문 후 3주 이내



FAQ

Q1.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1. 전반적인 총평가 함께 『컨설팅 진단항목』을 중심으로 각 항목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과 첨부자료(예시 및 참고자료 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누락된 사내 규정, 지침, 절차를 작성해 주나요?

A2. 본 컨설팅은 사내 규정 등 문서작성을 대행해 주거나, ISO 인증을 컨설팅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만, 미흡한 문서나 누락된 지침서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시나, 양식,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컨설팅 비용은 얼마인가요?

A3. 본 컨설팅은 삼성화재 보험계약자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Q4. 중대시민재해도 컨설팅 대상인가요?

A4. 현재는 중대산업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추후 법령 구체화시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